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예지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374

발의연월일: 2025. 2. 24.

발 의 자:김예지·이만희·박덕흠

정성국 · 김소희 · 서천호

김선교 • 서미화 • 최수진

송석준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, 시설급여,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,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·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, 신체기능 향상훈련, 재활교육,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.

그 사례로,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대응하는 「개호보험법」에 노인의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,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.

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3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마목부터 사목까지로 하고,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항 제2호 중 "장기요양급여"를 "장기요양급여(안마사에 의한 재활을 위한 안마를 포함한다)"로 한다.

라. 방문안마: 장기요양요원인 안마사(「의료법」 제82조에 따른 안마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재활을 위한 안마 및 안마와 관련된 교육·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	제23조(장기요양급여의 종류) ①
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	
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	
1. 재가급여	1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라. 방문안마: 장기요양요원
	인 안마사(「의료법」 제8
	2조에 따른 안마사를 말한
	<u>다. 이하 같다)가 수급자</u>
	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재
	<u>활을 위한 안마 및 안마와</u>
	<u>관련된 교육·상담 등을</u>
	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
<u>라.</u> ~ <u>바.</u> (생 략)	<u>마.</u> ~ <u>사.</u> (현행 라목부터
	바목까지와 같음)
2. 시설급여 : 장기요양기관에	2
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	
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	
의 유지・향상을 위한 교육	
·훈련 등을 제공하는 <u>장기</u>	<u>장기요양급</u>
요양급여	여(안마사에 의한 재활을 위
	한 안마를 포함한다)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⑤ (생 략)

② ~ ⑤ (현행과 같음)